



법령·지침 등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4. 1. 건설교통부령 제354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공공목적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 등을 구축하고, 이를 감정평가업자들에게 제공하여 감정평가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45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가격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

라. 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마. 도시개발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2003. 4. 7. 대통령령 제17963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32호)되어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결산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결산처분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외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부과대상사업임을 명시함으로써 시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5조제2항 후단"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결손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별표 1 제1호 사업명란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의 개정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의 비용이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급받는 복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하며, 그 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방공무원이 산간·도서 등 특수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복지근무수당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지급받는 복지수당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도록 함(제7조제1호의 2 신설).

나. 종전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와 관련한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범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이를 모두 비과세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2호).

다. 거주자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되, 정기급여일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제16조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에 한하여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부당한 소득공제신청을 방지함(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에 해당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 4. 18. 건설교통부령 제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공시지원통합정보체계의 이용근거를 정하는 한편, 부실벌점의 부과절차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 관련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함(제7조 신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실발점을 부과하던 것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부과하도록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부실발점 부과에 대한 이의 절차를 사후절차에서 사전절차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부실발점 부과절차와 기준을 정비함(제13조의5제2항 및 별표 8).

다. 사전예고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사유에 부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를 추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제3조의7제1항 단서).

라. 시공·용역능력을 평가할 때의 부실발점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평가주체인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발점을 기준으로 시공·용역평가점수에서 0.5 ~ 2점을 감점하던 것을, 모든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발점을 기준으로 1 ~ 3점을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건설업자 등을 지정할 때에 부실시공 등을 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함(제47조제1항제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제12조중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를"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무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설계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이 경우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등에 심의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현황관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을 각각 "용역현황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4를 삭제한다.

제13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제13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현장점검대상"을 "단속·점검방문일지"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제29조의2제1항중 "영 제52조제2항"을 "제3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검감리원"을 각각 "수석감리사"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단서중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2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3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안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인 것

제48조제2항중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 제88호서식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측정기관의 장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 측정기관의 장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책정 및 경감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1.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0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3
	-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표 8 제5호나목 2.12의 주요부실내용관중 "3번이상 교체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3번 이상 교체한 경우"로 하며, 동호다목의 3.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	○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3
				-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2
				-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1

별표 8 제5호라목(1)중 "당해 반기"를 "당해 반기 또는 다음 반기중"으로 하고, 동목 4.1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최신공법"을 "신기술"로 하며, 동목 4.2의 주요경감사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의 4.3란 및 4.4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 4.8의 주요경감사례란의 아래중 " 4.5사례"를 " 4.2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하며, 4.5사례"로, "동 사례"를 "4.5사례 및 4.7사례"로 한다.

-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현장인 경우

별표 8 제5호라목 5.1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최신관리기법"을 "신기술"로 하고, 동목 6.1의 주요경감사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의 6.4란 다음에 6.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6.5	- 용역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인 경우		1

별표 19 제1호의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의 수수료는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뒤쪽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의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연도 및 수량 등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증서 사본
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시공평가에 관한 별지 제8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 심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한 신기술심사관련 업무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용역현황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현황의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역현황관리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건설기술자경력수탁관리기관이 행한 용역현황관리관련 업무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역현황관리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 인사

▶ 부이사관 박 상 규(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장)